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55호
- 나.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찬성자 10명)
-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2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예약한 것이 적발되어 직권 취소된 사례가 4개월간 88건에 달하여 건전한 시민 문화를 해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저해하는 부정 예매로 민원이 발생함.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이 비정상 예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시장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타인에게 웃돈을 받아 이용권등을 판매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금지 및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의2가 신설(2023. 8. 8.)되었음.
- 법 제21조의2는 ①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와 ②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및 부정판매

금지1)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은 법 제21조의2제2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

1) 법 제38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²⁾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음.³⁾
- 주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⁴⁾
- 또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4) <2022년 자치법규 길라잡이> 53p

- 안 제4조의3제2항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를 서울시장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점차 지능화·범죄화되고 있는 암표 거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체육시설 예약 서비스의 공정한 이용 및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바람직하다 보임.
- 안 제4조의3제3항은 시장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정판매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는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의 원인이 되는 부정예약을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시립체육시설 예약 플랫폼인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붙임 참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동적 예약버튼

- '예약하기' 버튼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열하여 자동 클릭 방지



□ 심플 캡차(CAPTCHA)

- 표시되는 그림의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자동화 로봇이 아님을 인증



□ 구글 캡차(v2)

- ① 체크박스 클릭
- ② 타일 선택
 -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커서의 동작을 분석하여 로봇으로 의심될 때는 조건에 맞는 타일을 선택하도록 하여 로봇인지 구별



□ 문자인증

- 사용자의 휴대폰 문자 인증번호 발송 및 시스템 입력을 통해 본인(사람)임을 확인



의안번호
155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민석 의원 (주택공간위원회)	2024. 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공공시설 사용을 위해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방지 필요 ○ 「체육시설법」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 금지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및 예방조치 규정 신설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안 제4조제3항제1호) ○ 시장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4조제3항제2호) ○ 시장은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예약 방지조치 가능(안 제4조제3항제3호)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2.2. 조례안 발의(대표발의 : 이민석) - (발의자) 김재진, 김태수, 박영한, 이봉준 등 10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안 제1호) 및 부정판매 방지 노력(안 제2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23.8.8. 개정 / '24.2.9.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 매크로를 이용한 비정상 예약 예방(안 제3조)은 우리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디지털정책관)에 매크로 방지기능을 기 운용 중인 만큼,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 제고를 위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